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
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관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, 보건복지부에서 동일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일부(1~3급)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, 2015년부터는 전체(1~6급) 여성장애인에게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

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기존 편성예산 추경 시 삭감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」

3. 정비대상 사업군

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

-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사 성격의 현금성 급여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최 한 주
	담 당	강 명 천
	담 당 자	남 혜 영 (480-5184)